

「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」 안내

① 목적 : 소규모 사업주의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 경감 및 전자카드 사용환경 조성

② 사업 안내

- (사업소개)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이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임대비용을 공제회가 단말기업체에 지급
- (지원내용) 사업주별 단말기 1대, 5개월간 임대비용 전액 지원

< 신청방법 >

- (신청자격)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진 모든 사업주
 - 1) 공사예정금액이란? 설계금액 + 부가가치세 +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
 - 2)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사금액(3억원 미만) 기준으로 판단, 성립신고 후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한 경우도 인정
 - 3)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사예정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 기준
- (신청기간)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무관, 기한('25.3월~11월) 내 상시 가능
 - ※ 다만,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
- (제출서류) ①지원 신청서, ②사업주용 유의사항 확인서, ③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
 - ※ 단말기업체가 연락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수
- (제출방법) 제출서류를 공제회 이메일(card@cw.or.kr)로 제출
- (주의사항) ①임대비용은 공제회가 단말기업체로 직접 지급, ②실제 퇴직공제 성립 신고 시 '단말기 설치계획서'를 입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, ③발주기관 정산 불가
 - ※ 자세한 내용은 참여사업장 유의사항 안내 참조

- (지원단말기) NFC/BLE* 사용 가능한 이동형 단말기

* 근로자가 실물카드를 미소지한 경우에도 휴대폰을 활용하여 출퇴근 기록 가능

- (설치방법) 수도권 현장방문, 그 외 지역 택배발송

※ 시범사업 참여 신청 시 단말기업체에서 안내연락 및 설치 진행

③ 문의처 : 이메일(card@cw.or.kr) 또는 유선(02-519-2133~7). 끝.